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-6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7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대기오염 문제 완화 등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전기자동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충전시설 설치 주차장 이용 자동차 요금 감면 근거조항 마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전기자동차 주차 전용구획 설치 기준 신설

나.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/100 할인 조항 신설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주차장법」 제6조제1항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7조제1항10
-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25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##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7. 6. 1. ~ 6. 2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7. 4.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4(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(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)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,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,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.

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 4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.

별표 1 비고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전기자동차”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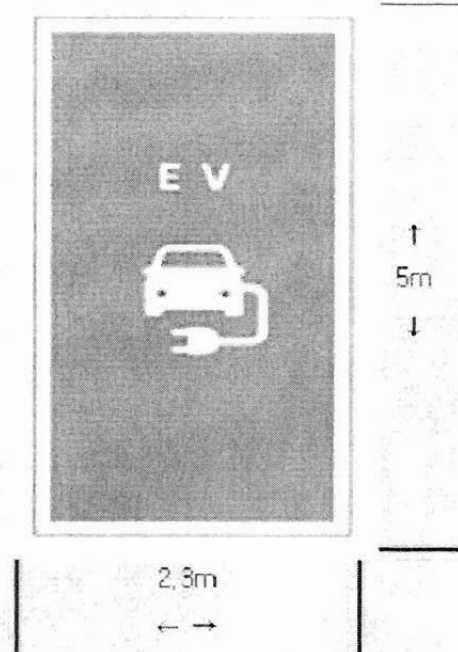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4]

전기자동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(제4조의4제3항 관련)

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이상×세로 5m이상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고,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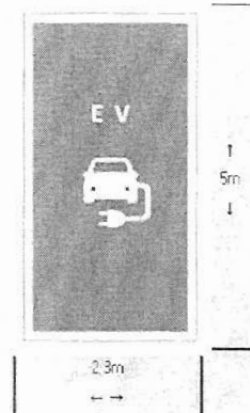


<신 설>

차”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
[별표 4]

전기자동차우선주차장 주차구획  
(제4조의4제3항 관련)



- 비 고 -

1.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(가로 2.3m 이상×세로 5m 이상)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고,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